

청주교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 7. 16. 제1387호

1차 개정 2020. 1. 10. 규칙 제1507호

2차 개정 2020. 12. 9. 규칙 제156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청주교육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재정위원회의 설치) 청주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재정위원회(이하 “재정위원회”)를 둔다.

제4조(재정위원회의 구성)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.

② 당연직위원은 총 5명으로 하며 교육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기획처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12.9.>

③ 일반직위원은 총 8명으로 하며 교원 2명, 직원 2명, 재학생 2명,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1.10.>

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청주교육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)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원: 청주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다.

2. 직원: 청주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에서 각각 추천한다. <개정 2020.1.10.>

3. 재학생:

(학부생) 청주교육대학교 재학생 1명을 학생처장이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.

(대학원생)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 1명을 교육대학원장이 원우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.

4. 외부위원: 청주교육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총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20.1.10.>

제6조(일반직위원의 임기)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1회에 한하

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.10.>

1. 교원 위원: 2년 <개정 2020.1.10.>
2. 직원 위원: 2년 <개정 2020.1.10.>
3. 재학생 위원: 1년 <개정 2020.1.10.>
4. 외부 위원: 2년 <개정 2020.1.10.>

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(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)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·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(이하 "수업료 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4.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·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
5.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6. 청주교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7. 대학회계직원(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)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
8.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제8조(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)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 ① 총장은 중·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교육대학원장, 교무처장·학생처장·총무처장 등 행정조직과 학술문화원장 등 부속시설의 장(이하 '부서의 장'이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2.9.>

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중·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) ① 총장은 청주교육대학교의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청주교육대학교의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1조(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)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청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, 착수 시기,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청주교육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,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)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, 복무 등의 근로조건(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청주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507호, 2020. 1. 10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566호, 2020. 12. 9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